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전화 (02)731-6556/전송 (02)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시청본관 3층) / 담당 : 윤영권

문서번호 법무 11010- 324  
 시행일자 1997. 6. 17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담당관	홍	
법제 계장	김	
기안	윤영권	협조

## 제목 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가. 발령예정일 : 97. 6. 20(금)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58호

따로붙임 : 훈령안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훈령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7. 6. 20(금)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58호

따로붙임 : 훈령안 1부. 끝.

# 서울특별시장

(제3안)

수신 감사담당관

제목 훈령 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7. 6. 20(금)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58호.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

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7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조



"음식물쓰레기 50% 줄입니다"

#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전화(02)731-6191~5 / 전송(02)731-6885  
처리부서 : 감사담당관 (시청본관 3층) 담당 임희철

문서번호 감사01540-

시행일자 1997. 6.13

(경유)

수신 법무담당관

참조

선 결			지 시	
접 입 수	일자 시간	1997. 6. 13	결 재	
	번호	2066	공 람	
	처리과			
	담당자			

## 제목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안 발령 의뢰

1.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발령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안 1부. 끝.

### 감사담당관

“음식물쓰레기 50% 줄입니다”

#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전화(02)731-6191~5 / 전송(02)731-6885  
처리부서 : 감사담당관 (시청본관 3층) 담당 임희철

문서번호 감사 01540 - 252

시행일자 1997. 6. 13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행정1부시장	[Handwritten Signature]	
감사실장	기획관리실장	[Handwritten Signature]
감사담당관	법무담당관	심사관
기안	감사총괄계장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

519



1.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별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안 1부. 끝.

# 서울특별시장



(제 2 안)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 요구

1.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개정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안 1부. 끝.

# 감사담당관

#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 1. 개정 이유

의욕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과감히 관용 조치함으로써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93.8.20부터 관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무부 훈령이 개정('97.5.13)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골자

- 가. 관용심사 청구권자를 피감사기관의 장으로 국한하던 것을 피감사자도 관용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7조)
- 나. 관용심사 청구기한에 있어,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서 "20일이내"로 연장함. (안 제7조)

시장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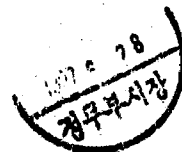
- 가. 관계법규 : 내무부훈령 제1193호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서울특별시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1항중 "최근 2년간 근무성적표"를 "평소근무성적"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중 "결정한다"를 "결정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같은조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관용심사청구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중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관용 처분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청구 및 처분대장"으로 한다.

- ① 감사실시기관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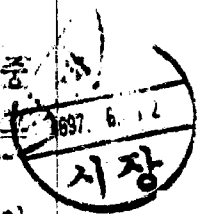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b>제6조 (관용심사를 받을 권리 고지)</b>  <u>감사자 또는 감사주관 책임자는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u>  <u>「피감사자는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을 범했을 경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기관의 장을 통하여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b>제7조 (관용심사청구권자) ① (생략)</b></p> <p>② <u>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종료후 감사활동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결과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심사 제외대상자 또는 징계시효도래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시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u></p> <p>③ <u>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당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특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u></p>	<p><b>제6조 (관용심사청구권 고지)</b>  <u>감사자 또는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중 또는 감사종료시에 피감사자에게 관용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u></p> <p><b>제7조 (관용심사청구권자) ① (현행과 같음)</b></p> <p>② .....</p> <p style="text-align: right;"><u>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의 장</u> .....</p> <p>③ <u>관용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피감사기관의 장이 당해 소속공무원중에서 특별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구하는 경우</u></li> <li>2. <u>피감사자가 소속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u></li> </ol>



현

형

개

정

안

< 신 설 >

④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용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청구 사유 및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될 때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⑤ 피감사기관의 장이 관용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제2호서식의 관용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감사실시기관의 장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용심사절차 및 의결) ① 감사 실시기관의 감사부서에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최근 2년간 근무성적표, 업무 성격과 처리과정, 직무환경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관용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사 실시기관의 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의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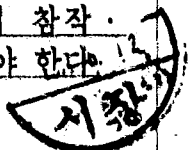
⑥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의 장 .....  
.....  
.....  
.....

제8조 (관용심사절차 및 의결) ① .....  
.....  
.....  
..... 평소 근무성적 .....  
.....

②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관용심사청구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 결정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현 형

개 정 안

제9조 (심사결과 처리) ①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최종 양정 결정시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며, 관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용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회를 주관하는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용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결과 처리) ①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청구 및 처분대장 .....  
.....



## 관용심사청구서 (제7조 관련)

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용심사를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심사대상자			
감 사 기 관	감시년월일		감 사 자
감시지적사항 및 관용청구사유 (필요시 증빙 서류 첨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피감시부서 책임자 의견			
기 타 참 고 사            형	① 평소 근무성적 ② 관용대상 업무의 성격 ③ 직무 환경 ④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 ⑤ 적극적 추진업무(제5조 제1호 각호) 해당여부		
	기관장(또는 감사부서책임자) 확인		(인)



\* 첨 부 : ① 인사기록카드 사본 ② 기타 관련증빙자료 등

[ 별지 제3호서식 ]

# 관 용 심 사 조 서 (제8조 관련)

건 명	
감 사 기 관 명	감시년월일
청 구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안)	
비 위 내 용	
관 용 청 구 사 유	
감시부서책임자 의견	
기 타 참 고 사 항	

서장

## 관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제8조 관련)

건 명					
심사대상자	소 속 관		직 위 (직급)		성 명
심사결과					

199 . . . . .

- 관용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 부위원장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간 사 (인)



[ 별지 제5호서식 ]

**관용심사청구 및 처분대장 (제9조 관련)**

일련 번호	접 수 년월일	처 분 년월일	심 사 대 상 자			심 사 결 과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